2021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2021. 3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목 차

Ⅰ. 혁신성장 기반 마련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1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 4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6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 8
5.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 10
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 인력요건 완화 및 일몰연장 ····· 13
7.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일몰연장 ····· 15

Ⅱ. 코로나19 위기 극복

1.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18
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 21
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 23
4. 가맹본부 상생협력 활동 세제 지원 ····· 25

Ⅲ.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재검토 ····· 28
2.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 30
3.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32
4. 상속세 부담 완화 ····· 34
5.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 36
6.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38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40
8.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41

Ⅰ. 혁신성장 기반 마련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현 황

○ 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10%, 중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중소 12%, 중견 5%, 그 외 기업 3% 공제

-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

□ 문제점

○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1년에도 대·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의 투자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대책마련이 시급

* 중견기업 설비투자 부진요인[1] : 수요부진(34.2%), 불확실한 경기전망(31.3%), 자금조달난(15.2%), 코로나바이러스(11.0%) 順

<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1] >

구 분	금액(조원)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계획)	2019	2020	2021(계획)
대 기 업	119.3	123.6	127.4	130.6	3.6	3.1	2.5
중견기업	28.2	24.6	21.6	19.7	△12.7	△12.2	△8.6
중소기업	20.2	18.0	15.4	15.4	△11.2	△14.1	△0.2

○ 중견기업은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세액공제(48.0%), 정책금융(39.4%), 투자 규제 완화(12.6%)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1]

1) 한국산업은행,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계획조사

○ 그러나, '20년 개편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의 실익이 대·중소기업에 비해 부족

- 중소기업 공제율이 대폭 증가하고, 대기업의 공제대상 자산이 확대된 반면, 중견기업은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감소하여 오히려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세법개정에 따른 자산별 세액공제율 증감 >

제도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자산)	▲7%	▲1%	▲1%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3%	-	-
에너지절약시설	▲3%	-	-
환경보전시설	-	▼2%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2%	▼2%
안전시설	-	▼2%	-
생산성향상시설	▲3%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4%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2%	▼2%	▼2%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7%	-	▼2%

* ■ 공제율 확대 ■ 공제율 축소

- 실제로 중견기업 지원이 축소된 제도의 '19년 일반법인 세액공제 총액은 6,247억원인 것에 반해 확대된 제도의 일반법인 세액공제 총액은 116억원에 불과하여 공제규모 차이가 현저하므로 개편된 제도에 따른 중견기업 공제 규모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제도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제도명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 수	금액(백만원)	법인 수	금액(백만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확대)	4,251	67,390	193	11,643
①환경보전시설(축소)	172	15,432	267	50,029
②근로자복지증진시설(축소)	93	2,173	118	17,413
③안전시설(축소)	77	2,058	346	19,363
④생산성향상시설(축소)	503	21,682	607	537,864
①~④ 합계	845	41,345	1,338	624,669

*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연보

**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통칭하여 일반법인으로 표기

○ 또한,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중소→중견 공제율 격차는 투자자산에 따라 1~5% 수준이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격차는 일괄 7%로 증가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절벽이 더욱 심화

-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있으며, 이러한 성장회피의 가장 큰 원인이 조세혜택임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 간 지원격차를 완화하여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54.3%, 금융지원 21.3%, 공공조달 지원 10.3%, 중소기업 적합업종 9.1%, 기타 5.2% 順(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취지에 맞게 투자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중견기업 공제율을 확대하여 중소→중견 성장사다리를 확충할 필요

□ 건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현행) (건의)
  · 일 반 : 중소 10%, <u>중견 3%</u>, 대 1% ⇒ 중소 10%, <u>중견 5%</u>, 대 1%
  · 신성장 : 중소 12%, <u>중견 5%</u>, 대 3% 중소 12%, <u>중견 7%</u>, 대 3%

2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 현 황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외 기업이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에서 손금 산입 가능('21.12.31까지)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 문제점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반도체 중심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견·중소기업의 투자는 올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

<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구 분	금액(조원)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계획)	2019	2020	2021(계획)
대 기 업	119.3	123.6	127.4	130.6	3.6	3.1	2.5
중견기업	28.2	24.6	21.6	19.7	△12.7	△12.2	△8.6
중소기업	20.2	18.0	15.4	15.4	△11.2	△14.1	△0.2

* 한국산업은행,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계획조사

○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를 '2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조기에 단행하기 어려움

*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20.12.17

○ 기업 투자금액의 조기회수를 통해 설비투자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수립·시행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허용기간을 충분히 확대할 필요

□ 건의내용

○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일몰기한 연장

-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 ⇒ (건의) 2023년 12월 31일까지

* 기준내용연수 범위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자산 75%,
그 외 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 50%

3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현 황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문제점

○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BIG3 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유망 신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신산업 영위 비중이 높은 우리 중견기업의 역할이 긴요

* 신산업 중견기업 수출 비중('15) :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반도체 38.1%(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18.2월)

○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신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제도 활용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1개사(8.6%)
(통계청, 2019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4.33%에서 '17년 1.86%로 크게 감소(기획재정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8.9월)

- 핵심성장 BIG3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업종의 중견기업 분포를 보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10.4%(29개사)에 불과하며, 바이오 업종도 코스닥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비중이 높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소수에 불과

* 자동차업종 중견기업 상장현황 : 코스피 11.1%, 코스닥 10.4%, 비상장 78.5%
바이오업종 중견기업 상장현황 : 코스피 37.2%, 코스닥 24.4%, 비상장 38.4%
(통계청, '19년 말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 법령에 규정된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

□ 건의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건의)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4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현 황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 문제점

○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6.9%(기술격차 3.8년)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의 가파른 추격으로 기술수준 차이가 거의 없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

< 미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4년	2016년	2018년
한국	78.4	78.6	76.9	4.4	4.2	3.8
중국	69.7	71.1	76.0	5.8	5.2	3.8
일본	93.1	92.7	87.9	1.6	1.5	1.9
EU	95.5	94.4	94.8	1.1	1.1	0.7
미국	100.0	100.0	100.0	0.0	0.0	0.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기술수준평가

○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투자 실적 및 계획(단위:%,억원)>

구분	전체	R&D투자		설비투자	
	투자금액	투자금액	구성비	투자금액	구성비
2019년 실적	286,499	78,224	27.3	208,275	72.7
2020년 계획	263,667	78,435	29.7	185,232	70.3
2021년 계획	251,779	79,204	31.5	172,575	68.5

*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정책자금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에서 차등 대우를 받게 되어 경영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도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녹록치 않은 상황

* 중소기업 25%→중견 1~3년차 15%→중견 4~5년차 10%→중견 6년차 이상 8%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투자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중소-대기업의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업성장에 따른 지원절벽을 완화할 필요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많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투자 지속성 및 성과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제조중견기업(1,053개사, 규모기준)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86%(902개)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20.2)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각 구간별 중견기업 공제율을 5%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8조8,481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건의내용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현행) 중견기업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 8% ⇒ (건의) 중견기업 1~3년차 20%, 4~5년차 15%, 6년차 이상 13%

5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현 황

○ 중소 제조업체 및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에 대해 중소 70%, 중견 5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21.12.31까지)

* '22.1.1 이후 중소 30%, 중견 0%

□ 문제점

○ 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이 한시 확대*(중소 50%, 중견 30%→중소 70%, 중견50%)되어 중견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올해 이후 중견기업의 지원은 일몰될 예정

*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20.12.17
** '21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37개 물품 신청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을 이용하는 중견기업은 일본·대만 등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대다수로 다른 관세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일몰에 대한 아쉬움이 큰 상황임

○ 관세감면 신청기업 대다수가 로봇, 제약 등 신산업을 영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 제품 수입이 불가피하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사용 제품과의 규격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으며 불량률 상승으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타 지원정책에 비해 세수부담이 적고*, 감면금액에 비해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일몰연장시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이 예상됨

* '17년 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실적 : 약 11.2억원
기타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모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16억원, 환경보전시설 500억원,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74억원, 생산성향상시설 5조3786억원 등

< 참고 : 최근 5개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적용 실적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청건수(건)	197	207	182	138	219
물품수량(개)	756	869	429	756	486
투자액(억 원)	952	996	973	1,058	1,627
감면액(억 원)	25	31	38	41	61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시행 연장요청, '18.08.

사례	A사

-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을 영위중인 A사는 LMS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여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기업의 공장에 해당 시스템을 납품
- A사는 '17년 현격한 매출신장을 바탕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전방산업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매출부진 및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음
  * 평택공장 신축 투자 : 208억원('17년), 시스템 생산공장 증설 : 987억원('18년~'20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3,711억원	2,831억원	2,320억원
영업이익	349억원	255억원	76억원
종사자수	599명	611명	602명

- 해당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선도함에 따라 제품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이 미흡,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임
- 설비라인 규격화 및 수입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대다수의 설비를 일본 수입품으로 진행하여 제품생산 원가 절감
- 공장자동화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천 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완료될 경우 1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을 진행할 계획

사례 2	B사

- B사는 엔드밀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세 국가에서만 생산되던 제품을 국산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현재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
- 매년 10여개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신청하여 감면 받고 있으며, 감면 대상물품은 주로 일본 및 대만에서 수입
- 100분의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절삭공구 시장은 높은 정밀도와 균일한 생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공장라인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품질저하 우려가 있어 위험부담이 큰 상황임

○ 공장자동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족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매출증대 및 법인세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건의내용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 (현행) 중소 70%, 중견 50%, ’21.12.31까지 ⇒
  (건의) 감면율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24.12.31까지

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 인력요건 완화 및 일몰연장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현 황

○ 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21.12.31까지)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소득세를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22.12.31까지)

- (인력요건)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 문제점

○ 중견기업의 33.4%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할 의사가 있으나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의 부재, 낮은 임금·복지 수준, 회사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연구개발 인력 채용 애로사유 : 직무능력·자격을 갖춘 지원자 부재(69.9%), 회사의 임금·복지 수준과 구직자 기대수준의 불일치(53.8%), 지방소재(36.6%), 회사의 낮은 인지도(21.5%), 이직으로 인한 인력유출(19.4%) 順(중견련, 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요조사, 2019)

○ 중견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이 많고, 수출기업 비중이 높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국내 인력과 마찬가지로 채용이 용이치 않음

- 외국인력 채용 시 임금수준·회사 인지도 등 대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은 경력보다 성장가능성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어 개정안의 강화된 경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사례	A사

- 소부장 중견기업 A사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연구원 7명을 채용 중이나 외국인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인력 요건이 강화될 경우 이를 충족하는 연구원은 0명으로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 경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높아 대기업과의 인력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해외채용 박람회를 통해 가능성이 보이는 직원을 채용하여 역량을 키웠는데, 소득세 감면 지원이 사라지면 연구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인력유출이 발생할까 우려됨

○ 외국인 연구원의 소득세 감면을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의 인력요건 완화 및 일몰 연장 및 필요

□ 건의내용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인력요건 완화 및 일몰연장

- (현행)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박사 학위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21.12.31까지
  ⇒ (건의) 일몰연장('24.12.31까지)
  (1안)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안)①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경력 2년 이상
  ② 박사 학위 소지자는 별도의 경력요건 없음

7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일몰연장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 현 황

○ 중소·중견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

□ 문제점

○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블랙록 등 민간 투자회사도 ESG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글로벌 기준 ESG 중요도>

< ESG 평가지표 중요도 비교 >

* 전경련, 글로벌 ESG 경영·투자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21.2.25)

○ 정부는 이와 같은 글로벌 기류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제구조 전반의 저탄소化를 도모하고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2.7)

- 저탄소化를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공급을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를 3대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그린뉴딜 관련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88개사)의 32.9%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ESS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초기 중견기업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평균 131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

* 중견련, 한국판뉴딜 중견기업 투자전망 및 애로사항 조사, '21.2.3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을 일몰연장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자발적인 투자촉진이 가능하며 나아가 탄소중립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건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일몰연장

- (현행) '21.12.31까지 ⇒ (건의) '24.12.31까지

Ⅱ. 코로나19 위기 극복

1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76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20조의14, 제120조의17

□ 현 황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이월하여 공제(단,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 중인 기업, 사업재편기업 등은 공제한도 100%)

* 이월결손금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이러한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금액

□ 문제점

○ '17년 이후 이월결손금 제도의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된 결과, '19년 국세통계를 보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이용한 중견기업 수가 증가(5.3%)했음에도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전년 대비 17.2% 감소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17년)80% → ('18년)70% → ('19년~)60%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17년)80% → ('19년~)60%

<기업규모별 이월결손금 공제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수	금액	수	금액
중소기업	99,708개	104,129억원	109,317개	122,930억원
중견기업	599개	16,190억원	631개	13,400억원
그 외 기업(상출집단 포함)	12,671개	137,823억원	8,391개	83,270억원
합계	112,978개	258,142억원	118,339개	210,600억원

* 국세청, 2019년~2020년 국세통계연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산업계는 매출급락, 원자재·부품 수급 곤란, 수출환경 악화, 자금조달 애로 등을 겪고 있어 이와 같은 전방위적 경영 위기 상황에서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중견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경기전망지수 및 실적지수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소폭 회복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영현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중견기업 경기실적 및 전망지수>

* 중견련, 2020년 4분기 경기전망조사

○ 2020년 개정 세법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으나,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여 심각한 현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견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산업 생태계 및 고용 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필요

- 이월결손금 공제는 타 공제·감면과 달리 과세를 이연하는 것에 가까워 공제한도를 확대할 경우, 초기 세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세수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

□ 건의내용

○ (1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시 중견기업 구간 신설(제13조, 제76조의13)

- (현행) 중소기업 등 100%, 그 외 기업 60% ⇒
  (건의) 중소기업 등 100%, <u>중견기업 80%</u>, 그 외 기업 60%

○ (2안)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한시 확대

- (예시) 향후 3년간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현 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인원에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 문제점

○ '17년과 비교하여 '20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85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는 41만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또한 동 기간 3.4% 증가하여 전체 고용 실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근로형태별 취업자 현황>

	2017.8월		2020.8월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정규직	1,343만명	67.1%	1,302만명	63.7%
비정규직	658만명	32.9%	743만명	36.3%
전 체	2,001만명	100.0%	2,045만명	100.0%

* 통계청,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고용경직에 의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지속 필요

-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크고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

□ 건의내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 연장

- (현행) ’21.12.31까지 ⇒ (건의) ’24.12.31까지

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 현 황

○ 요건을 갖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급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

- (기 업) : (전년 대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분 × 상시근로자 수 × 0.1) + [(해당 연도 1인당 시급 - 전년도 1인당 시급의 1.05배) × 해당 연도 전체 근로시간 합계 × 0.15]

- (근로자) 전년 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세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 문제점

○ '21년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8.2만명 감소하여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심각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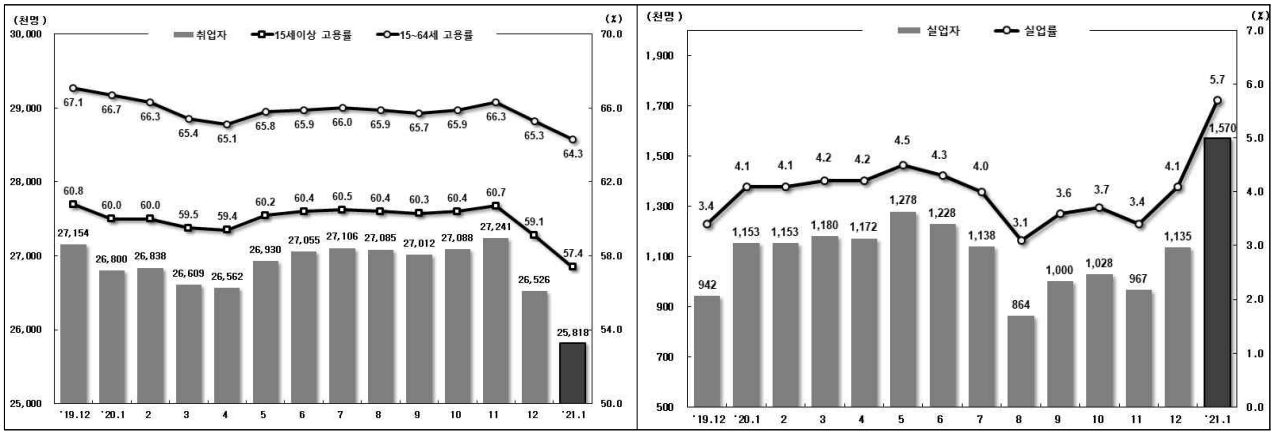

* 통계청, 2021년 1월 고용동향

○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고용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베트남, 중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이전이나 국내 고용 축소 등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

* 최저임금 추이 : ('16) 6,030원 → ('21) 8,720원 ⇒ 44.6% 증가

** 규제 강화 등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전경련, '21.2월) :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 해외이전(21.8%) 등

- 정부는 '18년 고용유지 과세특례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였으나 위기지역(고성, 군산 등)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여 수혜가 용이치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업 전반의 문제이므로 위기극복 시까지 대상을 확대지원하여 조속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의사항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선

- 대상확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 일몰연장 : (현행) '21.12.31까지 ⇒ (건의) '24.12.31까지

4 가맹본부 상생협력 활동 세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고객 대면 업종의 비중이 높고, 여행업·운수업 등 타 산업과의 연관도가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년 대비 매출 변화 : 외식업 50~70% 하락, 서비스업 40~60% 하락, 도소매업 40~50% 하락(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3.3)

-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5인 이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2020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가 59.33으로 '12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외식산업경기지수 추이>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0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 정부는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상생 가맹본부 정책자금 금리 우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여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중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 관계부처 합동)

○ 가맹본부는 본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주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로열티 감면, 방역물품 지원, 광고·판촉비 지원 등 가맹점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 상생을 실천

사 례
► (㈜이디야) 상생 가치 실현을 모토로 하는 국내 대표 커피브랜드로 전국 2,800여개 매장 보유.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가맹점에 대해 2개월(3,4월)간 로열티를 면제하고 원두, 방역물품 등을 무상 지원할 계획(전체 지원규모 20억원) ► (㈜더본코리아) 한신포차, 빽다방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외식기업으로 전국 1,480여개 가맹점 보유. 가맹점 지원책으로 전 가맹점의 로열티 2개월 분 전액 감면 ,주요 식자재 한시적 공급가 인하, 일시적 영업중단 가맹점의 폐기 식자재 비용 부담, 방역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책 발표

○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를 지원할 경우 기업의 보다 자발적인 상생을 촉진하고 공동체로서의 관계 구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공정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어지는 프랜차이즈 상생 행렬, '20.3.23

- 가맹본부 당 평균 가맹점 수는 49.1개*로 가맹본부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면 대출지원 등 기타 지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조기에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하고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9년 국내 가맹사업 일반 현황 : 가맹본부 수 5,175개, 브랜드 수 6,353개, 가맹점 수 254,040개(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 건의내용

○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 방안 마련

* 예 : 로열티 감면금액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법인세에서 공제

Ⅲ.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재검토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현 황

○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 근로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22.12.31까지)

- 투자포함형 : [당기소득×70%-(투자+임금증가+상생)]×20%

- 투자제외형 : [당기소득×15%-(임금증가+상생)]×20%

* 가중치 :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이월하여 차감 가능(이월기간 2년)

□ 문제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

* 중견기업 주된 경영애로 '자금조달 곤란' 응답 비중 : ('15) 11.6% → ('16) 14.0% → ('17) 13.4% → ('18) 14.7% → ('19) 18.1% (각 연도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고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일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유보금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인해 오히려 초기 중견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

* 중견기업 자금조달원 : 내부 유보자금 65.2%, 시중은행 차입 23.5%, 회사채 발행 2.2%, 정부 정책자금 활용 2.0% 順(중견련,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법인세율 인상('17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17년)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여유자금 비축이 필수적인 상황

- 실제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중견기업은 '20년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여신한도가 축소되거나, 조기 자금상환 압박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재정의 한계로 인해 정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견기업의 외부 신규자금 조달은 더욱 제한된 상황으로 유보금이 적은 중견기업의 경영난이 심화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건의내용

○ (1안) 코로나 위기극복시까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또는 한시유예

○ (2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포함분 과세 부담 완화

- (현행) [당기소득×7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금)]×20%*
  ⇒(건의) [당기소득×<u>65%</u>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금)]×<u>10%*</u>

* 舊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게 적용

2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현 황

○ 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 (기금출연) 기업이 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22.12.31까지)

- (무상임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산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22.12.31까지)

- (시설투자) 기업이 수탁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22.12.31까지)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 해당

□ 문제점

○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조특법 제8조의3),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 관계부처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 '19.12월

○ 그러나,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는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중견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중견기업의 53.2%는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위탁 거래 중견기업의 47.6%는 1차 협력사로 대-중견-중소기업 거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은 중간자인 중견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또한 수탁 중소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수탁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본 제도는 수·위탁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의내용

○ (시설투자) 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건의) 모든 기업 7%

○ (기금출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모든 기업 10% ⇒ (건의) 모든 기업 20%

○ 상생협력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3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 현 황

○ 기업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한계보유비율(중소·중견기업 10%, 그 외 기업 3%)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정상거래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기업 30%

** 중소기업 :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중견기업 :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대기업 :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기업

□ 문제점

○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상적인 거래마저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세방식이 강화됨

*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주요 내용('17년) : 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 변경 (정상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의 50%, 한계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의 50%)

-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세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및 상법 등에서 중복규제하고 있으며, '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

* 공정거래법 상 내부거래규제 대상 요건
(개정 前) 계열사 지분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보유 →
(개정 後) 계열사 지분을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 보유, 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도 규제

○ 중견기업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사업 진출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기업경영 도모하였으나, 잇따른 규제강화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훼손

○ 1차 협력사 중견기업은 급작스러운 원청업체의 발주량 증가 시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주 하청을 통한 생산만으로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움

- 비용 지원 및 지분 참여 등을 통해 2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도하였으나, 하청업체의 방만 경영 및 내부 관리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

○ 특히, 특허 등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산업 특성상 전후방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거래로 대체할 경우 핵심기술 유출 및 기업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18년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됨('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건의내용

○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 개선

- (현행)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의 5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의 50%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건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기술적 특성상 불가피한 거래에 대한 예외 인정

○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과세 완화

4 상속세 부담 완화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최대주주 할증평가)

□ 현 황

○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OECD 36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60%임

* 할증평가율 : 중소기업 0%, 그 외 20%

□ 문제점

○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4%에 불과하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인들이 기업의 승계와 매각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

-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60%로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

- 가업승계 완료기업은 승계 시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부담(71.7%)'을 응답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세수 대비 상속세 금액과 비중>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국세청 세수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333,291	2,555,931	2,835,355	2,015,183
상속세	11,817	12,207	12,028	12,586	17,185	15,865	16,961	19,437	19,949	23,418	28,315	17,252
	0.75%	0.79%	0.72%	0.70%	0.89%	0.83%	0.87%	0.93%	0.85%	0.92%	1.00%	0.84%

* 국세청,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세계 각국은 상속세 부과로 인한 경제위축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음

<OECD 회원국(35개국) 중 상속세 유지국가와 폐지국가>

상속세 유지 국가 22개국 ( )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 폐지국가 13개국 ( )안은 상속세 폐지연도
일본(55%), 대한민국(50%), 프랑스(45%), 영국(40%), 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30%), 독일(30%), 칠레(25%), 네덜란드(20%), 핀란드(19%), 덴마크(15%), 그리스(10%), 아이슬란드(10%), 터키(10%), 폴란드(7%), 스위스(7%), 룩셈부르크(5%), 이탈리아(4%), 헝가리(제3자 18%), 슬로베니아(14%)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이스라엘(1981년), 뉴질랜드(1992년), 포루투갈·슬로바키아(2004년), 멕시코·스웨덴(2005년),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노르웨이(2014년) 라트비아·에스토니아(상속세 미도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 대다수 기업은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중소기업의 48.6%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자산이 부족하다고 응답 (상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 의원) 검토보고서, '15.10월)

○ '21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 부대의견으로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건의내용

○ 상속세를 부담하는 OECD 22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3.68%)을 고려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5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6항

□ 현 황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 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 업력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문제점

○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존속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고유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비해 공제한도가 적고,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기간 및 요건을 요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함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감면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전망)	2020(전망)	합계	연평균
상속세 감면액	735	638	940	1,915	1,997	1,245	6,225

* 2018년 이전은 실적치, 2019~2020년은 「2020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전망치

** 출처 :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 수혜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규모를 유지하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상속세 감면으로 발생한 여유 재원을 통해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

○ (공제한도) 중견기업의 평균 상속세는 1,185억원으로 추정되나,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평균 377억, 보유현금(현금성 자산과 이익잉여금의 합)은 평균 1,567억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

* 심상규,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중견기업계 요구사항, '13.11월

○ (대상확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3,868개사가 74.2만명(평균 192명)을 고용할 때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600개사가 61.6만명(평균 1,027명)을 고용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가업상속공제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상향조정하면 상속세수는 1.7조원 감소하나 기업 매출액 52조원(6.8%), 법인세수 6,816억원(3.8%), 일자리 1,770명(3.0%)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1조원으로 확대시 매출 52조, 고용 1,770명 증가」, 2019. 2. 20)

○ (사후관리요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를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많아, 경제상황이나 경영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사후관리 요건(53.2%)이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김용덕,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가업승계 실태조사 분석」, IBK경제연구소, 2018.).

□ 건의내용

○ (공제대상 확대)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공제한도 확대) (현행) 최대 500억원 ⇒ (건의) 1,000억원

○ (사후관리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7년→5년으로 단축,
가업용 자산 처분가능 비율 10%→20% 상향

6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현 황

○ 상속세 연부연납 시 금전, 납세보증보험,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단, 비상장 주식 제외)

□ 문제점

○ 전체 중견기업의 82%는 비상장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상속인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 제공이 불가

구 분	비상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소 계
기업수	4,110개	463개	431개	3개	5,007개
비 중	82.09%	9.25%	8.61%	0.06%	100.0%

* 중견련, 2019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통계

○ 국가는 비상장주식의 환금성이 낮다는 이유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나,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문제는 납세의무자(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담보를 불허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

- 비상장주식이 과세대상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조세상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게 하는 결과를 강요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하므로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홍석준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및 일반상속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현 황

○ 피상속인 생전의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100억원 한도로 최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

□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해 생전증여를 통한 체계적인 가업승계를 희망

* 주된 가업승계 방식 : 일부 증여 후 상속 39.4%, 아직 결정하지 못함 25.3%, 생전 증여 21.7%, 사후 상속 2.1% 順(중소기업중앙회, 2019 가업승계 실태조사)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전 증여액을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과세 유예제도로, 그 한도액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으며,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건의내용

○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하게 500억원으로 확대

8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정책적 지원이 아쉬운 상황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중소기업 16개사, 중견기업 3개사가 선정됨

○ 세법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

○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유의미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건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

□ 건의내용

○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가업상속공제한도 1,000억원,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200억원

*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원,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100억원